

Tax News Flash

- Transfer Pricing & Customs

March 17, 2025

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.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또한,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/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01 이전가격

EU: 회원국 간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교환 체계 확립을 위한 DAC9 개정안 도입

유럽연합 이사회가 조세 행정협력지침 개정안(이하 "DAC9")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. 이 개정안을 통해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체계를 이행하기 위한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 안을 제안한 지 불과 5 개월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, 유럽의회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.

DAC9 은 다국적 기업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원국 간 조세 정보 교환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특히 기존에는 다국적 기업 그룹이 개별 법인마다 따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, 이제는 한 곳에서 통합 추가세액 신고서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고 신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. 아울러 제출된 신고서 정보가 각국 세무당국 사이에서 원활하게 오갈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 체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.

이번 개정안은 회원국 간 세금 투명성을 높이고 필라 2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핵심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 DAC9 시행을 위해 각 회원국은 2025 년 말까지 국내법에 이 개정안을

반영해야 하며, 다국적 기업 그룹은 2026년 6월 말까지 첫 추가세액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. 또한 회원국들은 2026년 말까지 신고된 정보의 교환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

앞으로 이 개정안이 실제 운영되면서 기업과 세무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,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호주: 특수관계자간 금융거래 관련 지급이자 손금인정 판례

최근 호주 연방법원은 특수관계자간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손금 산입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
사건배경

다국적 제약그룹인 Mylan N.V.는 호주에 기반을 둔 Alphapharm 을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간 대출을 통해 인수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손금 산입을 주장하였으나, 호주 과세당국(이하 "ATO")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과도한 이자를 적용(PartIVA 규정 위반)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습니다.

법원의 판단 및 근거

호주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,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
- 상업적 정당성: Mylan의 부채 구조가 현금 흐름 관리와 외부 레버리지 감소를 위한 합리적 선택
- 글로벌 인수 맥락: 66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수 전략의 일환으로 호주 자회사의 재무 구조 평가
- 미국 세법의 영향: Mylan의 미국 내 '전체 해외 손실'(OFL) 상황을 고려할 때, 부채 금융이 상업적으로 타당
- 대안 분석: ATO가 제시한 100% 자본 조달 대안은 비현실적
- 이자율과 재용자 행태: 초기 이자율 설정이 시장 기준에 따랐다는 점 인정

판결에 대한 ATO의 입장

ATO는 해당 판결이 모든 특수관계자간 금융거래에 대해서 적용받는 것이라고 강조하며, 향후 특수관계자간 금융거래에 대해서 상업적 필요성을 초과하는 부채수준, 글로벌 전략 및 호주 내 세금 공제간 균형, 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, 이전가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

1. 사실관계

- 국내은행 런던지점은 체코법인 甲으로부터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으며 「한-체코 조세조약」상의 제한세율(10%)을 적용하여 체코 정부에 원천세를 납부함
- 해당 이자소득은 영국에서 법인세 과세 후 본점인 국내은행의 과세표준에 반영됨

2. 질의요지

-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甲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체코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

3. 답변내용

-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므로, 내국법인인 은행의 런던지점이 체코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「한-체코 조세조약」상의 제한세율에 따라 체코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, 해당 은행은 「법인세법」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
- 그러나, 해당 법인세의 적정성은 「한-체코 조세조약」 및 현지 세법을 기반으로 원천징수 내역과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

4. 관련법령

- 「법인세법」 제57조 「【국납부세액공제 등】
 -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법인세액”이라 한다)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공제한도금액”)이라 한다)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
- 「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조세조약」 제4조 【거주자】
 - ① 이 협약의 목적상, “한쪽 체약국의 거주자”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, 거소,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,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모든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, 그 체약국 및 그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. 그러나 이 용어는 그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2025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1. 개요

- 관세청은 매년 상/하반기에 주요 개정사항 등 “달라지는 관세행정” 자료를 발표하며, 2025년 3월에 ‘2025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’을 발표함
- 금번 발표자료에는 “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,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,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,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가지 Chapter에 대해 총 18가지의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됨
- 이하에서는 각 Chapter 별로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정 전/후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안내하고자 함

2.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

1)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·대상 확대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·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협정) 한-EFTA FTA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- (대상) 「FTA관세법」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심사 대상 항목 7개에 대해 협정과 관계 없이 전체 신청가능 하도록 허용

개정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기업 A사는 스위스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수입통관하며 한-EFTA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고 싶었으나, 해당 협정에는 원산지 사전심사가 규정되지 않아 사전심사 신청이 불가함
개정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-EFTA FTA에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, A사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스위스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이 한-EFTA FTA에 따른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가능

- 【기대효과】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,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법적안정성 제고
- 【시행일】'25. 1. 1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개정)

3.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

1)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조사 중지(훈령 제 36 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세조사 중지 시 중지 횟수에 관계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(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)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 (협정) 한-EFTA FTA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

- 【기대효과】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
- 【시행일】 '25. 1. 1. 시행 (「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」 제36조제1항)

2) RCEP 수출자·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RCEP 원산지증명 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●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좌동
< 신 설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수출자·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- (대상 회원국) 한국·일본·호주·뉴질랜드

개정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일본에 신발을 수출하는 S사는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
개정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일본에 신발을 수출하는 S사는 수출자 스스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작성·발급하여 일본 수입자에게 제공

- 【기대효과】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
- 【시행일】 '25. 1. 1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의2 신설)

4.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

1) 수입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확대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부과 제척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원칙)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● (예외) 부정행위의 경우 10년 	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현행과 같음>
< 추 가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7년

- 【기대효과】 수입 무신고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관세부과의 실효성 제고
- 【시행일】 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21조 개정)

2)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원칙) 부족세액의 10% - (예외) 부정 과소신고*시 40% <p>*① 허위증명·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·은폐 ④ 그 밖에 포탈,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행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무신고) 해당 관세액의 20% - (밀수입죄로 처벌시) 해당 관세액의 40% 	<p>□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현행과 같음> - 부족세액의 40% → 60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현행과 같음> - 해당 관세액의 40% → 60%

- 【기대효과】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제고
- 【시행일】 '25. 1. 1. 시행(「관세법」 제42조 개정)

Key Contacts

삼성 KPMG TAX6 본부



강길원 부대표(본부장)

T. 02-2112-0907



백승목 전문

T. 02-2112-0982



김상훈 전문

T. 02-2112-7939



윤용준 상무

T. 02-2112-0277



이영호 상무

T. 02-2112-6763



김태주 전무(관세)

T. 02-2112-7448



오영빈 상무(관세)

T. 02-2112-0435

home.kpmg/socialmedia



home.kpmg/kr/ko/home/services/tax.html

[Privacy](#) | [Legal](#) | [Unsubscribe](#)

27th Floor, Gangnam Finance Center, 152, Teheran-ro, Gangnam-gu, Seoul, Korea

©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.,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,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. All rights reserved.

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.